

의안번호	2211846
의 퇴 인	송재봉의원
회 답 일	2026.1.6.
추계번호	25B41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폐기물처리 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억 500만원(연평균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안 제4조의2)	305	-	-	-	-	305	61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u>사업장폐기물</u> 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u>사업장폐기물</u> 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후 및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3항)	
3	안 제5조의3(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신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의무·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25조의5(폐기물 처분업 등) 신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및 유해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처분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폐기물 처분업등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제2항)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방법 2.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방법	의무규정

		3.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및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등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4. 유해재활용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 등에서 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허가신청, 폐기물 운반, 명의대여 금지, 준수사항,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함. 다만, 제25조제3항의 기간 중 “2년”은 “3년”으로 함 (제3항)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의 범위·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안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5조의3(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시·도별로 관할 구역에 발생할 사업장폐기물의 규모를 알 수 없고,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의 범위·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25조의5(폐기물 처 분업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현행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 활용업 및 폐기물 처분업등으로 분리하고, 폐기물 처분업등 의 수행 주체를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 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규정할 경우, 종전 민간업체가 처리하던 물량을 공 공부문이 부담하게 되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등에 따 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¹⁾ , 현시점에서는 향후 폐기물 발생 규모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공공폐기물처리 시설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
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
요비용을 추계함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3억 5백
만원이 소요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 금액	주요내용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5.~ 2026.6.	305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국내외 순환경제 여건 변화 조사·분석 및 전망 · 순환경제(자원순환) 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27~’36)」 (안) 마련 ·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지침안 마련 · 순환경제기본계획 마련 정책협의회(포럼) 구 성·운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본계획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만 총 3억 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장비 기본계획 (안 제4조의2)	305	-	-	-	-	305	61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11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